

낙동강물관리 특별법안 및 언론보도 관련자료

2000. 12.

산업건설위원회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 제 안 일 : 2000. 6. 23.

□ 제 안 자 : 정부(환경부)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법률안 내용

提案理由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고,
중·상류지역의 오염원 입지(汚染源 立地)와 관련하여 상·하류지역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등 수질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하천
인접지역에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시설(排出施設)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汚染總量管理制)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낙동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 을 부과·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
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상·하류지역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수계 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하여 공장·

축사·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시·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上水源保護區域)이 지정되지 아니한 취수시설(取水施設) 주변지역으로서 수질이 좋지 아니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洛東江水系管理委員會)를 설치하고, 동위원회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40조).

라. 환경부장관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 방침(汚染總量管理基本方針)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廢水排出施設)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산업단지에는 폐수를 일정기간 저류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독물 영업장 등에는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 물수요 관리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시장·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의 주민이 받고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6조).

자. 환경기초시설(環境基礎施設)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收用)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 내지 제31조).

차.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수요자 및 전용수도(專用水道) 설치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35조).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 ☐ 제 안 일 : 2000. 10. 24.
- ☐ 제 안 자 : 김형오 의원 외 24인
-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 법률안 내용

제안이유

낙동강 수질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낙동강의 수질은 전국 최악의 상태임. 특히 낙동강 하류 주민들의 취수원인 물금지역의 평균 수질은 4.0ppm으로 4대강 주요 취수원에 비해 2-4배 이상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낙동강 하류주민들의 생존권을 심히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낙동강 상류지역이 한강 상류지역에 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가 25배, 1일 폐수 방류량이 4배에 달하는 오염원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또한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상·하류지역의 심각한 지역갈등이 노정되고 있음.

따라서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낙동강 수계 인접지역에는 대규모 개발행위 등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지방자치 단체별로 도입하는 한편, 물이용 부담금을 최종수요자에게 부과·징수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낙동강 상·하류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려는데 목적을 둬.

주요골자

- 가.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水邊區域)을 지정·고시하여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과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취수지역중 일정거리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나. 누구든지 하천 구역내에서는 농약 및 비료사용행위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하천인접지역내의 대규모 개발행위를 낙동강 하류지점의 수질이 연중 2급수 수준에 달할 때까지 유보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上水源保護區域)이 지정되지 아니한 취수 시설(取水施設) 주변지역으로서 수질이 좋지 아니한 지역을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洛東江水系管理委員會)를 설치하고, 동위원회가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40조).
- 마.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汚染總量管理基本方針)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 바.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廢水排出施設)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산업단지에는 우수·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독물 영업장 등에는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낙동강수계중 일정지역에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은 유해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줄이기 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관할 시·군·구별 물수요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5개년종합계획을, 수도사업자인 시·군·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 시장·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6조).

카. 환경기초시설(環境基礎施設)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수용(收用)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 내지 제31조).

타. 갈수기에 정수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낙동강의 특수성을 감안, 물이용부담금을 원수의 수질 및 물사용량에 따라 최종수요자에게 차등 부과·징수하여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로 함(안 제35조).

하. 낙동강수계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산하에 상설 감시기구를 두고,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의 우려가 있을 때는 환경부장관이 반드시 댐방류량의 증대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명하도록 함(안 제42조, 제43조).

입법예고

번호	문서번호	공고일	제	목	조회
1	환경부 공고 제 2000-162호	2000.11.29	영산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202
2	환경부 공고 제 2000- 161호	2000.11.29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205
3	환경부공고제 2000-144호	2000.10.26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1183
4	환경부 공고 제 2000-147호	2000.10.28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3436
5	환경부 공고 제 2000-137호	2000.10.0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808
6	환경부공고제 2000- 134호	2000.09.22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안) 입법예고		1155
7	재활 57507-894	2000.08.0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		1536
8	환경부 공고 제 2000-111호	2000.07.3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4181
9	환경부 공고 제 2000-109호	2000.07.2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67
10	환경부공고 2000-108호	2000.07.2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2156
11	환경부고시 제 2000-107호	2000.07.18	수도법중개정법률안		1439
12	환경부 공고 99	2000.07.04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1961
13	환경부 공고 제 2000 - 83호	2000.06.10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896
14	환경부공고 제 2000-65호	2000.05.19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		3173
15	환경부공고 제 2000-46호	2000.04.2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5880
16	환경부공고 제 2000-26호	2000.03.16	먹는물수질기준및감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432
17	환경부공고 제 2000 - 40호	2000.04.07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967
18	환경부공고 제 2000-32호	2000.03.3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625
19	환경부 공고 제 2000-24호	2000.02.28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837
20	환경부 공고 제 2000-21호	2000.02.19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3982
21	환경부 공고 제 2000- 15호	2000.02.07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701
22	환경부공고 제 2000- 13호	2000.02.0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837
23	환경부공고제 1999-109호	1999.12.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413
24	환경부공고 제 1999-108호	1999.12.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646

금강·영산강특별법 입법예고

環境部, 錦江特別法, 榮山江特別法 立法豫告

- 대청호·주암호 상류 수변구역 지정 등 상수원인접지역 관리강화
- 금강·영산강수계 전역에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
- 금강·영산강수계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를 강화
- 금강, 영산강수계 전역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주민지원 대책 확대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 등

□ 環境部는 [錦江水系물管理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案]과 [榮山江水系물管理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案]을 마련하여 11월 29일부터 20일간 立法豫告하였다.

□ 同法案은 금년 10. 24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관계부처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확정된 [錦江水系물管理綜合對策]과 [榮山江水系물管理綜合對策]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내년 상반기중 國會에 제출할 예정이다.

□ 同法案의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水邊區域의 指定·管理

- 대청호 및 주암호 호소 주변과 상류 유입지천 양안 일정거리(대청호 상류 양안 300m-1km, 주암호, 수어호 등 양안 5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유입 분류 하천이 아닌 지천의 경우에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지정 배제)하여 오·폐수를 多量排出하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공동주택, 콘도미니엄 등의 신축을 금지
-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汚·廢水 처리기준을 배로 강화(BOD, SS 20 → 10mg/ℓ)함

上水源保護區域 職權指定制度 導入

- 주요 취수원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 市長・郡守가 上水源保護區域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市・道知事가 직권으로 上水源保護區域으로 지정토록 함
- 다만, 地方自治團體 및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水質을 I 등급을 유지하는 배수구역의 경우에는 上水源保護區域 직권 지정을 유보

汚染總量管理制 의무 시행

- 環境部長官은 錦江・梁山江水系별로 水系管理委員會의 의견을 듣고 環境保全 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하천 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 관리기본방침을 수립・시달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시급 이상은 2004년, 광역상수원 하류의 군급은 2008년부터 시행)
- 環境部長官 또는 관계 自治團體의 장은 사업장 별로 오염 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으며,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排出量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總量超過賦課金을 부과・징수함
- 地方自治團體長은 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도시개발, 산업단지, 공장 등의 認・許可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自治團體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廢水排出施設의 설치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하천구간별 目標水質을 달성하여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그 시행을 유보함

特定水質有害物質 管理 強化

- 特定水質有害物質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環境部長官에게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 및 배출량과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며
- 排出量 줄이기 計劃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 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廢棄物埋立施設の 設置 制限

- 금강·영산강·설천강 본류 및 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이내에는 廢棄物埋立施設の 설치를 제한

물利用負擔金の 부과지역

- 대청호 및 금강수계 전역과 주암호·상사호·동북호·수어호 등으로부터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함
-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 지역에 대하여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물利用負擔金の 用途

- 주민지원사업비
-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 상수원관리지역, 水邊區域 등의 토지 매입 및 수변녹지대 조성사업 지원
-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처리하는 水質汚染防止施設の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 民間 水質監視 및 保全活動 사업에 대한 지원 등

住民支援事業 擴大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上水源保護를 위해 規制를 감수하고 있는 地域으로서 環境部長官이 인정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육영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住民支援事業의 種類

- 농림축산업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교육기자재 등 지원사업, 오염물질정화시설과 하수도의 설치·정비사업 지원 등 직·간접사업을 지원

물需要管理目標制 등 需要管理 強化

- 市·道知事は 관할 市·郡·區별 물수요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水質監視活動 支援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강·영산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環境部長官을 委員長으로 建設부장관, 錦江·榮山江水系 市·道知事 및 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되는 「錦江水系管理委員會」와 「榮山江水系管理委員會」를 각각 설치하여 유역내 주요 물관리정책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부여

2000. 12. 5 (화)
매일신문

낙동강 특별법 제정 또 연기

‘물 갈등’ 갈수록 꼬여

낙동강특별법 제정이 또다시 연기돼 ‘물 문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전망이다. 최대공약수를 찾는다 해도 어느 한쪽의 양보없이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속질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통과 자체가 난망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이 나오고 환경부 산하에 낙동강 물이용

이행 경북은 정부안 완화를 주장,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 역시 낙동강특별법이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격’으로 자치단체간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4일 환노위에서는 낙동강특별법을 상징과 함께 법안 심의를 아예 보류, 해법찾기가 쉽지 않음을 반증했다.

환노위 소속 수도권 출신 한 의원은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등 관련 5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입장을 절충해 마련한 정부안을 두고 일부 자치단체가 계속 문제점을 제시하고 나서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환노위는 조만간 다시 자치단체간 이해가 상충되는 쟁점사안을 두고 조율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안이 5개 지자체의 최대공약수를 뽑아 만든 것이라는 점과 관련 정부안 외에 다른 해법이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완기자

조사단 구성... 해법 못찾아

쟁점사항 다시 조율기로

조사단이 구성됐으나 갈등만 증폭시켰을 뿐 해법은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한나라당 부산 출신 의원들이 지난 10월 정부안에 반대, 대체입법안을 제출했고 지난 2일에는 부산시가 낙동강특별법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완요구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한 상태다.

반면 경남은 부산의 강화된 대체법안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대구는 정부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

맴도는 법안... 속타는 대구·경북 현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4월부터 각 상임위별로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경북 현안과 관련된 일부 법안들이 어 아와 심리 쟁점이 지역 간 이기주의 등으로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지방경제 살리기 특별법>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치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경제 살리기 특별법'이 한나라당 공석 단원으로 채택되지 못해 표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권 정기국회(12월 9일 회회) 안에 법안을 제정,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의원들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민재 의원과 한나라당 부실 여외도연구소가 공동 입안하고, 지난 달 32일 대구권 의원들의 보충을 거쳐 마련된 '지방경제 살리기 특별법'은 4월 한나라당 정책위 검토를 거쳐 총재단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랐으나 의결이 유보됐다. 입안·상안작업을 주도해온 대구와 인천·경기 지역의 이해가 좁혀지지 않음, 당 지도부가 '외견 수렴' 및 '법률적

지역이기주의'의 '벽'... 상임위 심의 걸림자

「낙동강 특별법」이건 못 좁혀 보류 결정

「지방살리기」도 野-野 갈등... 당론 채택 못해

검토·보완'을 이유로 제논여기로 한 것이다.

대구 등 비수도권 의원들은 서울·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묶어 이들 지역에서 영남·강원·충청·호남·제주 등 '지방'으로 지정하는 자본과 인력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겠다. 반면 당 정책위가 총재단 회의에 내놓은 법안은 수도권이 아닌 '서울'에서 나머지 지역으로 이전하는 자본과 인력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위 인(案)대로라면 서울에서 경기나 인천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혜택이 부여돼 비수도권으로의 유인효과가 반감되는 등 애초의 법

안 취지가 꺾여줄 수밖에 없다는 게 강경희(박근혜 부총재 등 지방출신 부총재들)의 현안이었다.

이와 관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장비제법 개정법률안'을 놓고 역시 경기 의원들과 비수도권 의원들이 격론을 벌였다. 이재창·여규태 의원 등 경기권 의원들은 이 법안에서 현행 수도권 광역권축 전략을 해체하거나 과밀부담금 차등으로 전환하고자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권 의원 등은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1994년 이후 시행해온 광역권축 전략을 해체할 경우 수도권 권역력 집중이 가속될 게 반박하며 법안에 반

대입점을 밝혀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지방세법 개정안> 문득갑 대구 시장이 반대와사를 표명한 광역시세(稅)인 자본채세와 구(區)세 전환 문제도 행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뤄졌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정안에 반영이 실패한 서울을 제외한 대구 등 1개 광역시에 한해 전환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다는 관측이다. 한국전력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김영웅·김성원 의원 등 발의)은 행정부가 별도의 정부법안을 제출해 지연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낙동강 특별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4일 '낙동강 특별법안'(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북측과 부산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낙동강 특별법도 정부안 통과에 반대해온 경북측(김성조 의원(구미)과 부산의 김두성 의원(부산 남)이

이날 회의에 앞서 유론해 위원장과 사전협의할 갖고, '위협을 간에 어긋나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 특별법은 '일시 부채의(一事不兩議)' 원칙에 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론될 길이 불해졌다. 유 위원장은 "피로 남을 것이라...라며 추후 논의를 기약했지만 현재로서는 다음 임시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질 지, 임시 심의되더라도 의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별도 수정안을 제출한 부산권 의원들이나 정부안을 '한강 특별법'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경북권 의원들 모두 입법 자체에 미온적이라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 부산권 의원들은 법 제정이 대구 위원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위한 사전조치로 받아들여야 하고, 경북권 의원들은 '없는 것 없이 규제만 당할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훈기자 asksh@yeongnam.com
/공화식기자 kwonh@yeongnam.com

환경부 제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놓고

"지역 경제 위축된다" 반발

12.4(월)
국무신문

4공단 조성·지역개발 사업추진 차질 경북지역 국회의원도 일제 반발

환경부가 지난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수계법과 그 상류지역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공공,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것으로 보아 지역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취수시설 주변 지역으로 수질이 좋지 아니한 지역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 오염 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수립, 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초과하여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를 제한하며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치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중단 및 삭감, 폐수재활용시설 설치 제연등을 병치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에는 폐수를 일정기간 저류할 수 있는 인공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지자체 별로 물수요 관리목표를 설정, 목표를 이행 못하는 자치체는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를 제한 한다고 되어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법률(안)에 대해 구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기업체, 관계자들은 기존의 환경수계법보다 훨씬 강력한 측면이 많아 영향성 측면에도 어긋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심각한 경영상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들에게 인공저류시설 설치 및 부지확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물론 오염총량 관리제가 지역개발사업에 크게 위

축, 구미국가공단 을4단지 조성 및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 대한 지역민과 반대 입장을 반영하듯 지역국회 의원인 김성조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 국회의원들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낙동

강 특별법은 오염물질 허용 한도량을 정하고 있어 산업활동에 위축시키고 국가공단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막을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또 오염물질 총량을 환경부로부터 할당받아 연차적으로 줄여야 하는 데다 상수도 사용량을 정해 제한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낙동강 상류지역의 경제 기반을 붕

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구미시지구당도 지난날 27일 이 법안과 관련 지역기업체 관계자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를 열고 환경 수계법보다 강화된 측면이 많으며 법 제정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기반인 공단은 물론 구미시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기자)



▲ 지난 달 27일 한나라당 구미시지구당이 개최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긴급회의

